

多發·大型化산불·強力한 對策세워야

被害住民·山主에 適切補償하는 山林災害保險定着과

被害算出은 自然環境등 公益의被害도 加算해야...

吳 判 龍

強力한 山火根絶·團束策있어야

88年 本誌38號 本欄을 通하여 「山火 豫防을 위한 國家的인 豫防政策이 保求된다」고 主張한바 있거니와 89年에 들어 4月 3日現在 全國서 山火發生 138件에 人命被害가 18名이나 된것을 볼때 山火根絶策이 確立되지 않는限 自然保護運動乃至 國立公園등 自然公園愛護運動은 消極的이며 枝葉的인 成果以上 期待하기 어려울것같다. 山林廳의 集計에 따르면 例年比 더위가 若干빨리온 탓이라고는 하나 前述한대로 4月3日現在 山火發生이 138件에 山林 被害面積이 767ha 약 230만평 林木 피해액이 9천1백50만여원. 人命被害가 무려 18名인데 모두가 死亡이란점을 重視해야겠다. 其中6名은 鎮火作業中 질식 또는 火傷으로 高貴한 犠牲을 當한 분이요 나머지 12名은 失火者들인데 그들도 自身의 몸을 마쳐 鎮火에 臨했으니 亦是 哀痛한 主觀이라 아니할 수 없다. 火因도 入山者의 不注意에 의한 失火와 農民의 논·밭 취불이 번진것이 大部分이기에 關係官努力如何로 減少될 수 있다고 본다.

해마다 봄이 되면 이같은 事例가 반복되는데도 豫算不足, 손不足만 嘆해온것이 一線官署나, 山林當局의 辯明인데 經濟開發에 가려진 高질화된 政府當局의 失策이라아니할 수 없다. 被害額에도 앞으로는 自然環境·公益의被害도 認定되어야 한다. ▲88年度 270件(山林피해 878ha· 피해액9천9백여만원 人命피해없음) ▲87年度는 87件(山林피해 191ha· 피해액 2천9百만여원· 人命피해없음) 이었음을 想起해볼 일이다.

乾燥期가 계속되고 例年보다 빨리 봄이 올것이라는 氣象豫報가 있었음에도 「취불」이나 入山客의 火氣團束이 未治한것도 指摘될수있지만 山林法을 執行할 關係公務員이나 入山者· 山林隣近 住民들이 잘지키지 않는것이 主要原因이라하겠다.

自然公園의 山林保護는 指定場所外火氣禁해야

自然保護區(自然公園) 入山者는 누구나 성냥등 火氣一切를 所持못하게 몸과 車輛까지 搜索한다는 中國, 入山者를 리스트化해 點檢하고 無斷入山者에겐 發砲權까지 부여하고있

다는 西獨, 國立公園內서 喫煙하면 百달리의 罰金を 科하는 美國의 경우까지는 못미치더라도 入山者의 火氣品을 徹底히 團束한다든가 喫煙이나 炊事를 指定場所외에서 할때에는 가차없이 依法措置하지 않고는 山林法의 遵法은 어렵다.

自然公園이나 近隣風致林등에는 一次的으로는 一定한 距離地點에 喫煙場所를 設置해 놓고 아무데서나 喫煙하지 못하게하고 炊事는 水道施設이 될때까지는 食水를 各自가 運搬해서라도 野營場 또는 指定된 適當한 場所以外서는 嚴禁토록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恒久的措置가 될수없고 언젠가는 山林속에서 炊事또는 喫煙行爲는 嚴禁돼야만 하며, 法에 의한 入火証交付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火氣는 사라져야 한다.

入山者가 알도록 團束條文揭示해야

一般的으로 山林法은 잘알려지지 않고있는 것도 山林當局이나 一線官署의 行態이다. 自身들이 잘알기에 國民들도 잘아는줄 錯覺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山林法 第100條(山火의 豫防法) ▲第101條(山火警防期間의 設置) ▲第102條(住民動員令및 鎮火·市長·郡守·營林署長 또는 所屬山林關係公務員은 當該 地域內의 消防官署·警察署·民防衛部署등 公共機關과 協調하여 山林所有者와 山林契, 現地住民등에 鎮火를 위한 動員과 必要한 措置를 命할수 있다) 그밖에도 山林(苗木포함)을 竊취한者は 6月이상 10年 以下의 징역 또는 2百만원 이하의 罰금을 과하게된 ▲第116條(山林竊盜罪) ▲第119條 山林放火罪는 特殊山林을 除外한 山林은 5年以上의 有期懲役을 規定하고 있다. 설사 自己소유의 山林일지라도 6月以上의 懲役에다 2百만원이하의 罰금을 併料할수있으며 他人의 山林에 延燒한때는 1年以上의 유기징역에 2百만원 이하 罰金併料할수 있고 未遂犯도 처벌케 돼있다.

山林失火罪와 入火証 交付規定된 施行令의 改正保求, 그리고 弘報및 團束

山林法 120條(山林失火罪) 山林失火에는 징역 3年이하 또

는 2百万원 이하의 벌금. 過失로 自己所有의 山林을 태운경우도 똑같은 罰을 받도록 되어있다.

특히 가장 問題視되는 山林法施行令95條가 現在 死文化에 가깝도록 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同時施行令95條에는 分明히 「法에 의하지 않고는 山林 또는 山林에 近接한 土地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明文化했고 入火証의 交付등 充分한 防火措置가 있어야 許可토록 規定되고 있는것이다. 여기서 提起되는 것은 「불」에 對한 明確한 種別 規定을 改正해야만 앞으로의 山火豫防·團束 策이 보다 具體化될 수 있다고 본다. 「성냥」(라이타포함) 「버너」(휘발유·石油·가스) 모두 「불」로 봐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當然히 入山者의 이같은 火氣器具는 保管시키든지 不應者는 入山을 시켜서는 안돼야한다.

山林에 近接한 논·밭에서 「취불」을 피울때 萬若의 경우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上記施行令條文에도 明示된것 처럼 充分한 防火措置가 있어야 許可하고 擔當公務員이 立會하는등 安全守則을 지켜야하는데도 아무런 대비도없이 논두렁을 태우다 강풍으로 불이 山으로 번지자 消防器具나 消防服도 없는 住民들이 무작정 불을끄다가 희생된 例가 얼마전의 洪川산불 등 많다.

班常會를 통한 住民弘報의 遵法정신양양과 병행해서 市·郡·面·洞 一線공무원은 勿論·山林관계자·경찰·소방·각급公園管理所要員·義勇消防隊員·山林契員·農村指導要員 모두가 協同이되어 監視를 철저히 하지 않고서는 弘報啓導로서 萬事가 잘된것으로 생각하고 放心하는 타성에서 요즘 山火의 多發現狀이 빚어지고 있는것은 아닌지 實로 걱정된다. 關係公務員들이 눈치나 살피고 좋은것이 좋다는 式으로 보아넘기고 公職者로의 使命感을 저버린다면 물러나야한다.

食水의 汚染으로 國民의 生命이 威脅받고있는 오늘날 山林마저 火魔에 갇힌다면 自然의 荒廢化가 加速되어 우리모두가 돌이킬수 없는 運命에 處하게 된다는 事實을 直視하여 關係政府機關이나 一線 公職者들은 強한 責任感을 갖고 山火豫防과 團束에 財政·人力을 아끼지 않고 對處할것을 促求한다.

[巡察要望事例=3.26 관악산 야영장(신림동쪽)에서 청소년들이 캠핑하면서 火木불로 故事 부근 화장실門쪽은 모두 부서진지 오래됨. 3.12. 加平군 明智山入口서 도유된 사업소직원들이 산불조심 「리본」달기 계몽을 하였는데 한편에서는 웃놀이. 2.12. 北溪山 輔國門아래쪽에서 雜商들이 무질서하게 散在되어 장사·분취위 飲食만드는곳도 있음. 4.5 은평구와 西大門區의 경계地点인 翁安山頂 남쪽 松林入口에 산책객이 불을 피워놓고 던지도 않고 간혹적. 水落山·佛岩山·淸溪山·등은 비교적 良好하나 市民公園格인 近隣山岳의 樹木 管理狀態가 아쉬움]

住民動員鎮火의 現代化와 山林등 公益 被害補償

山林廳의 病虫害防疫이나 鎮火에 動員될수있는 헬리콥터가 11대 예산도 기껏 5억원(국립공원관리공단 1억5천만원·人件費 7천만원·장비구입8천만원)에 불과하다한다. 응급시 마을 住民들을 動員해도 쇠갈구리程度的 鎮火道具가 고작이며 소나무가지로 바닥을 두드린다는지 맞붙은 불여 불을끄는 등 尖端科學時代에 너무나 落後된 狀態이다. 이러한 原始的인 現實이 改善되지 않는다면 住民動員은 無謀하며 無責任한

一線 行政이라 指摘하지 않을수 없다. 政治人들은 都市小市民들이 不公正하다고 死揆하는 「農家負債擔論」에 앞서 이러한 問題의 根本解決策에 對한 立法을 서둘러야 할것이다.

또한 國家의 管理소홀과 他人의 不注意로 被害를 입은 住民과 山主들에게 適切한 補償을 해주는 山林災害保險制度를 定着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본회이사인 金樟洙박사(韓國林政研究會會長·高大명예교수)는 日本의 경우 林野면적2천5백만町步중 1천2백만정부가 成林化되어있으나 우리는 크게 낙후되고 豫算과 人力때문에 올해 綠化면적 目標는 3만정보인데 大型山火가 몇번나면 無가된다고 말했다. 나무를 사랑하고 國民과 山主에게 利益을 주는 山林(造林)政策이 實行돼야한다고 力說했다. 심기만 獎勵하고 伐採은 막대한 利權視하는 禁忌政策은 止揚돼야 한다는것. 이래서야 遠대한 綠化政策에 아무도 投資하지 않는다는 結論. 그래서인지 最近紙上報道에 의하면 都市近郊의 山은 投資對象이 되어 거의 山主不在狀態이기에 山을 監視하는 사람이 없는것도 山火多發의 要因中の 하나라는 指摘도 있다. 山林法 113條①項에 「山林廳長은 山林所有者에 對하여 그 所有하고 있는 山林을 山林災害保險에 加入하도록 山林所有者에게 권유한다」고 매우 소극적으로 規定했고 同法114條(災害에 對한 補償)는 「政府는 旱害·水害등 天災·地變으로 因한 養苗事業(政府指定의 養苗사업에 限함)의 被害에 對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補償 할수있다」고 規定하여 一般山林에 對하여는 補償에서 除外하였다. 保險專門家에 의하면 山林災害保險은 現在 거의 死保險이 되어있다한다. 損失額이 크고 保險犯罪 우려도 많아 保險率이 높아 加入者나 保險會社 모두가 忌避하며 國家에서 產災保險과 같은 制度裝置가 안되면 어렵고 우선 國公有林, 學校林등 부터라도 試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見解이다. 寺刹도 建物만 火保에 加入하는 傾向이라한다. 山林廳은 先進國의 事例을 調査하여 善良한 住民·山主 補償과 山林 災害保險 制度를 하루속히 導入해야 할것이다. (筆者:韓國國立公園協會 事務局長)



梁澤述 會員의 新年揮毫

己巳元朝 智異山北部支部 李秉采 事務局長便에 新年揮毫를 보내주신 本會智異山北部(全北) 支部會員인 梁澤述 雲山書道會長(사진)의 略歷과 揮毫의 뜻은 다음과 같다.

△揮毫:江山如畫(江山은 그림과 같다)

△略歷:△全北 南原出生 雅号·雲山(61세) △雲山書道會長 △國會議員同友會招待作家 △韓國國家訓普及會會長 △全國綜合 藝術祭諮問委員 △韓國藝術人聯全北支部長